

의안
번호

380

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2.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380호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5.

2. 제안이유

-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지역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다. 스마트도시 사업 관리 및 사전협의(안 제8조)

라.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·운영(안 제9조)

마. 교육 및 홍보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
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09. 19. ~ 2024. 10. 10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¹⁾에 따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와 그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, 주민들의 삶의 질 및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임.
- 우리 구는 2021년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공모사업 선정을 기점으로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처하고 있음. 이에 부합하여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여 스마트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각종 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사료 됨.

□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 및 제2조(정의)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“스마트도시”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,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같은 법 제3조의2를 근거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.
- 안 제4조(지역계획의 수립)는 우리구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,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명시함.

1)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3조의2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안 제5조(데이터의 수집과 활용)는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·분석·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관련 정보가 법령²⁾에 따라 제공될 시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아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하여 안전한 정보 처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6조(공공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)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연계·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7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·운영)는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³⁾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,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·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8조(스마트도시 사업 관리 및 사전협의)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총괄부서 지정 및 전담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.
- 안 제9조(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·구성)와 제10조(실무협의회 구성

2)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(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) 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·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. 3. 21.>

3)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"스마트도시기반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·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
 나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
 다.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 라.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,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등)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 정책 구현을 위한 사항을 자문·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,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스마트도시 관련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.

- 안 제11조(교육 및 홍보)와 제10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는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과 스마트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의 수립 추진에 관하여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함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스마트도시관리 운영 및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등 상위법인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성북구 도시기능 및 도시이미지 제고,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 됨.

「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조례」 제정 현황(2024.10.현재)

■ 서울시 : 서울특별시 포함 총 17개 자치단체

자치단체명

서울시, 강남, 강동, 강서, 관악, 광진, 구로, 금천, 노원, 동대문, 동작 서초, 송파, 양천, 용산, 은평, 종로